

○ 기본내용 (서울중앙지방법원)

사건번호	2025가합11913	사건명	[전자]손해배상(기)
원고	손OO 외 9998명	피고	에000000000000
재판부	제22민사부(나)(전화:02-530-1745(동관11층 합의1과))		
접수일	2025.07.03	종국결과	

○ 진행내용

진행구분 : 전체 ▼

•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,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• 송달결과는 '0시 도달'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송달결과(2007.03.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,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)를 조회하고자할 경우에는 '확인'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 확인

일자	내용	결과	공시문
2025.07.03	소장접수		
2025.07.04	참여관용 보정명령(인지대/송달료)		
2025.07.04	참여관용 보정명령		
2025.07.04	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보정명령(인지대,송달료)등본 송달	<u>2025.07.07 도달</u>	
2025.07.04	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	<u>2025.07.07 도달</u>	
2025.07.07	원고 소송대리인 이OO 보정서 제출		
2025.07.30	피고 에000000000000에게 소장부본/소송안내서/답변서요약표 송달	<u>2025.08.04 도달</u>	
2025.09.02	피고 에000000000000 답변서(청구취지/원인) 제출		
2025.09.03	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답변서부본(25.09.02.자) 송달	<u>2025.09.03 도달</u>	

•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(대리인)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.

• 송달간주(발송송달)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.